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I)

編輯者 註

다음은 지난 95. 10. 日本 國會에서 通過된 日本의 新 食糧管理法인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을 入手하여 翻譯한 것입니다. 앞으로 2회에 나누어 掲載하오니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法 律 概 要

第 1 條 (目的)

이 法律은 主要한 食糧인 米穀 및 麥類가 主食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고 또 重要한 農産物으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米穀生産者로 부터 消費者에 이르기 까지 計劃的인 流通確保를 위한 措置 또는 政府의 主要食糧의 買入, 輸入 및 賣渡措置를 總括的으로 강구함으로써 主要食糧의 需給과 價格의 人정을 기하고 國民生活과 國民經濟의 委託에 합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關係)

第2條(基本方針)

1. 政府는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 需給의 正確한 豫測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計劃性과 합리성을 갖춰 米穀의 生産調整과 圓滑한 推進, 備蓄의 彈力的인 運營 및 適切하고 圓滑한 流通 確保를 圖謀함과 동시에 適切한 買入, 輸入 및 賣渡를 行한다.
2. 政府는 麥類의 需給과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해 適切한 買入, 輸入 및 賣渡를 할 것(第2條 關係)

第3條(定 義)

1. 「主要食糧」이란 米穀, 麥類(小麥, 大麥 및 과맥을 말한다. 이하 같다)其他 法令이 정하는 食糧(이것을 加工 또는 調製한 것으로서 法令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2. 「米穀의 生産調整」이란 米穀生産의 目標을 基礎로 하여 農業者마다 정해진 面積의 畝에 對하여 벼 以外の 作物의 作付 기타 方法에 의한 米穀의 生産活動을 調整하는 것을 말하고 「生産調整實施者」란 當該生活活動의 調整을 實施한 者를 말한다.
3. 「米穀의 備蓄」이란 米穀의 供給이 不足한 事態에 對備하여 米穀을 在庫保有하는 것을 말한다.
4. 「計劃流通數量」이란 消費者에 對해 計劃的인 供給을 기하는 米穀의 數量을 말한다.
5. 「計劃出荷數量」이란 生産者로 부터 計劃的으로 出荷된 米穀의 數量을 말한다.
6. 「自主流通米」란 計劃出荷數量에 관한 米穀중 生産者로 부터 登錄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 또는 賣渡委託된 것으로서 第7의 3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計劃에 따라 流通되는 것을 말한다.

7. 「政府米」란 計劃出荷數量에 관한 米穀중 生産調整實施者로 부터 政府가 收買하여 賣渡하는 것 또는 輸入한 米穀으로서 政府가 取得하여 賣渡하는 것을 말한다.
8. 「計劃流通米」란 自主流通米 또는 政府米를 말한다.
9. 「第1種出荷取扱業」이란 米穀 生産者로 부터 第5의 1의 計劃出荷米의 賣渡 또는 賣渡委託받아 그것의 出荷를 取扱하는 業을 말한다.
10. 「第2種出荷取扱業」이란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第1種出荷取扱業을 하기 위해 登録을 받은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로 부터 第5의 1의 計劃出荷米의 賣渡 또는 賣渡委託를 받아 그것의 出荷를 取扱하는 業을 말한다.
11. 「出荷取扱業」이란 第1種出荷取扱業 및 第2種出荷取扱業을 말하며 「登録出荷業者」란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 및 第2種登録取扱業者(第2種出荷取扱業)을 하기 위해 登録을 받은 者를 말하며 以下같다)를 말한다.
12. 「都賣業」이란 計劃流通米의 都賣業을 말하고 「小賣業」이란 計劃流通米의 小賣業을 「販賣業」이란 都賣業 및 小賣業을 말한다.(第3條關係)

第4條(基本計劃)

1. 農林水産大臣은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每年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를 정하고 이를 公表한다.
 - 가. 米穀의 需給豫測에 관한 事項
 - 나. 米穀의 生産目標 기타 米穀의 生産調整에 관한 事項
 - 다. 米穀의 備蓄目標數量 기타 米穀의 備蓄 運營에 관한 事項
 - 라. 計劃出荷量 및 그중에서 米穀의 備蓄運營을 위해 政府에서 買入하게 될 米穀의 數量에 관한 事項

다. 計劃流通數量에 관한 事項

바. 米穀의 輸入數量에 관한 事項등(第4條 第1項, 第2項 및 第6項 關係)

2. 農林水産大臣은 基本計劃 作成에 즈음하여 當該基本計劃에 米穀生産者의 正確한 營農活動에 기여 되도록 事前에 1의가, 나 및 라項에 揭記한 事項에 對해 計劃的인 生産 및 出荷指針에 되도록 정하여 이를 公表토록 할 것(第4條 第3項 關係)

第5條(米穀生産者)

1. 米穀生産者는 基本計劃에서 定해진 計劃出荷數量을 基礎로 한 農林水産大臣이 米穀生産者마다 정하는 數量(以下「計劃出荷基準數量」이라 한다)에 관한 米穀(以下「計劃出荷米」라 한다)에 대하여 自主流通米로서 第1種 登錄出荷取扱者에게 賣渡 또는 賣渡委託 혹은 政府米로서 政府에 賣渡하든가 그밖에 第1種登錄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委託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當該 賣渡에 관한 米穀은 計劃出荷米는 表示가 附着된 米穀이라야 한다.
2. 政府米 賣渡에 있어서는 基本計劃에 의해 정해진 政府收買數量을 基礎로 하여 農林水産大臣이 生産調整實施者마다 정한 數量에 관한 米穀에 對하여 行할 수 있도록 한다.
3. 米穀生産者는 農林水産大臣에게 計劃出荷基準數量의 調整變更을 申請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農林水産大臣은 米穀의 計劃的인 流通確保에 支障을 招來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이를 承認하도록 한다.
4. 米穀生産者(法令으로 정한 者에 限함)는 1의 規定에 의한 計劃出荷米에 對해 賣渡 또는 賣渡委託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第1種登錄出荷取扱業者와 米穀出荷에 관한 契約(以下「出荷契約」이라 한다)를 맺어 實施하여야 한다.
5. 米穀生産者는 計劃出荷米 以外の 米穀을 賣渡하는 경우에는 事前에 當該賣渡

에 관한 數量을 農林水産大臣에게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第5條關係)

第6條(出荷取扱業)

1.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1種出荷取扱業 및 第2種出荷取扱業의 區分에 의해 都·道·府·縣의 區域마다 農林水産大臣의 登錄을 받아야만 한다.
(第6條 關係)
2. 農林水産大臣은 第1種出荷取扱業 登錄의 申請者가 그 業務를 正確히 遂行하는데 충분한 資力·信用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一定數 以上の 米穀生産者와 出荷契約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 그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第9條 第1項 關係)
3. 第1種登錄出荷取扱業者가 計劃出荷米의 賣渡 또는 賣渡委託(以下「賣渡등」이라 한다)을 받을 者 및 賣渡등을 할 수 있는 者를 다음과 같이 特別히 정한다.
가.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登錄된 都·道·府·縣의 區域內的 米穀生産者以外の 者로 부터 自主流通米의 賣渡를 받아 또는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錄에 관계되는 都·道·府·縣의 區域內的 生産調整實施者 以外の 者로 부터 政府米의 賣渡委託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第7의 3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契約(自主流通計劃에 관한 賣渡등에 對한 契約을 말한다. 以下 같다)을 締結하고 있는 登錄에 관계가 있는 都·道·府·縣 區域內的 第2種登錄出荷取扱業者 혹은 第7의2의 自主流通法人에게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하고 또는 登錄都賣業者(都賣業을 하기 위해 登錄을 받은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其他 法人으로 정한 者에게 自主流通米를 賣渡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하고 賣渡委託을 받은 政府米를 政府에 賣渡하지 아니하면 않되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錄에 관계가 있는 都·道·府·縣 區域內的 第2種登錄出荷取

扱業者 또는 第7의2의 自主流通法人에게 委託하여 政府米를 賣渡할 수 있다.(第1條 및 第15條 關係)

4. 기타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에 관한 준수 事項, 報告, 改善命令, 登録取消등에 關係 所要의 規定을 整備할 것(第16條부터 第21條까지 關係)
5. 農林水産大臣은 第2種出荷取扱業 登録의 申請者가 그 業務를 正確히 遂行하는데 充分한 資力·信用을 갖지 못한 경우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 第7의2의 自主流通法人등과 自主流通契約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登録을 拒否하여야 한다.(第24條 第1項 關係)
6. 第2種 登録出荷取扱業者가 計劃出荷米의 賣渡등을 받을 者 및 賣渡등을 하는 者를 다음과 같이 特定하도록 한다.
 - 가.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録에 관계되는 都·道·府·縣 區域内の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 以外の 者로 부터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받거나 또는 政府米의 賣渡委託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나. 第7의3의 認可를 받아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第7의 2의 自主流通法人에게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하고 또는 登録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한 者에게 自主流通米을 賣渡하지 않으면 아니하게 하고 賣渡委託을 받은 政府米는 政府에 賣渡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第7의 2의 自主流通法人에게 委託을 하여 政府米를 賣渡할 수 있다.(第25條 및 第26條 關係0
7. 기타 第2種登録出荷取扱業者에 관한 준수 事項, 報告, 改善命令, 登録取消등에 관한 所要規定을 整備할 것(第27條 關係)

第 7 條(自主流通法人)

1. 農林水産大臣은 2에서 規定하는 業務 및 3의 自主流通計劃의 作成에 關係 適

切하고 또 確實하게 實施함에 充分한 經理的 基礎 및 技術的 能力을 갖어야 하며 一定數量 以上の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받을 수 있다고 認定되어야 하는 등의 基準에 適合한 法人을 2의 申請에 의해 當該業務 및 當該自主流通計劃의 作成을 行하는 者로서 指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28條 第1項 關係)

2. 1의 規定에 의해 指定을 받은 者(以下「自主流通法人」이라 한다)는 3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計劃에 따라 다음에 揭記하는 業務를 遂行하는 外에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錄出荷取扱業者로 부터 賣渡委託을 받은 政府米를 政府에 賣渡할 수 있도록 한다.

가.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錄出荷取扱業者로 부터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받아 그것을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定한 者에게 賣渡할 것.

나. 自主流通米의 一部에 對해 備蓄 및 調整·保管을 할 것

다. 가, 나에 附帶되는 業務를 遂行할 것(第29條 關係)

3. 自主流通法人은 自主流通米의 計劃的인 流通을 確保하기 위해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한 自主流通計劃을 作成하고 農林水産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가. 自主流通米의 買入 또는 賣渡委託에 따른 數量에 관한 事項

나. 自主流通米의 賣渡數量에 관한 事項

다. 第9의 2의 가의 價格形成施設에서 賣渡하는 自主流通米의 數量에 관한 事項

라. 自主流通米의 備蓄數量에 관한 事項(第30條 第1項 및 第2項 關係)

4. 기타 自主流通法人에 관한 報告, 區分經理, 改善命令, 指定取消등에 관한 所要規定을 調整할 것(第31條부터 第34條까지 關係)

第8條(販賣業)

1. 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都賣業 및 小賣業의 區分에 따라 都·道·府·縣

知事の登録을 받아야 한다(第35條 關係)

2. 都·道·府·縣 知事は 都賣業登録申請者が 그 業務를 正確히 遂行함에 充分한 資力·信用을 갖지 못한 경우와 또 計劃流通米의 年間販賣豫想數量이 一定數量 以上이라고 設定되지 않을 경우등에는 그 登録을 拒否한다(第38條 第1項 關係)
3. 登録都賣業者에 對한 計劃流通米의 買受先 및 販賣先을 다음과 같이 特定한다.
 - 가. 自主流通法人·登録出荷取扱業者, 기타 法令이 정한 者 以外の 者로부터 自主流通米를 買受 또는 政府, 기타 法令이 정한 者 以外の 者로부터 政府米를 買受하지 못한다.
 - 나. 登録小賣業者(小賣業을 하고자 하는 登録을 받은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 기타 法令으로 정한 者 以外の 者에게 計劃流通米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第39條 및 第40條 關係)
4. 기타 登録都賣業者에 관한 준수 事項, 報告, 改善命令, 登録取消등에 관한 所要의 規定을 整備할 것(第41條 關係)
5. 都·道·府·縣 知事は 小賣業 登録의 申請者が 그 業務를 正確히 遂行할 수 있는 資力·信用을 갖지 못한 경우등에는 登録을 拒否할 수 있다(第44條 第1項 關係)
6. 登録 小賣業者는 登録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하는 者 以外の 者로부터 計劃流通米를 買入하여서는 안된다(第46條 關係)
7. 기타 登録小賣業者에 관한 준수 事項, 報告, 改善命令, 登録取消등에 관한 所要規定을 整備할 것(第47條 關係)

第9條(自主流通米價格形成센터)

1. 農林水産大臣은 自主流通米의 去來 指標가 되는 適切한 價格形成을 기하며 圓

映시킬 것은 勿論 그 밖에 生産條件 및 物價 기타 經濟事項을 參照하여
米穀의 再生産을 確保할 것을 으뜸으로 하여 정하도록 할 것

다. 農林水産大臣은 나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買入價格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意見을 聽取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할 것(第59條 第1項부터 第3
項까지 關係)

2. 政府는 米穀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第60條
第1項 關係)

3. 米穀의 政府 賣渡

가. 政府는 政府米를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하는 者에 對해 隨意契約
에 의해 賣渡를 할 것 다만 農林水産大臣이 隨意契約은 不適當하다고 간
주할 경우에는 入札方法을 一般競爭契約 또는 指名競爭契約중 農林水産大
臣이 選擇하는 競爭契約에 의해 賣渡토록 할 것

나. 가의 規定에 의한 賣渡를 行할 경우의 豫定價格은 標準賣渡價格을 基準으
로 定하도록 할 것

다. 나의 標準賣渡價格은 農林水産大臣이 米穀의 需要 및 供給動向, 家計費
또는 物價, 기타 經濟事情을 參照하여 消費者의 家計를 安定시키는 것을
우름으로 하여 정하도록 할 것

라. 農林水産大臣은 나의 規定에 의한 標準賣渡價格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審
議會의 意見을 聽取하도록 할 것

마. 2의 輸入을 目的으로 하는 買入등에 관한 米穀을 가의 規定에 의해 賣渡
하는 경우의 價格은 國際規約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정하고 告示하는 金
額을 當該米穀買入 價格에 加算한 金額을 超過하지 않도록 할 것(第61條
第1項부터 第4項까지 및 第8項 關係)

4. 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特別한 方式에 따른 買入 및 賣渡

가. 政府는 米穀등의 輸入을 하고자 하는 者 및 當該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買受를 하고자 하는 登錄都賣業者 기타 法令으로 정한 者(나에서는 「買受資格者」라 한다)가 連名으로 申請할 때에는 이에 應하여 當該輸入에 의한 米穀등을 買入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政府는 가의 規定에 의해 買入한 米穀등을 買入申請을 한 買受資格者에 對하여 當該申請에 應해 賣渡하도록 할 것(第62條 第1項 및 第2項 關係)

5. 政府는 特히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賣渡를 할 수 있도록 할 것(第63條 第1項 關係)

6. 米穀의 輸入 또는 輸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政府의 위탁을 받은 경우 기타 一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農林水産大臣의 許可를 받도록 할 것(第65條 第1項 關係)

第11條(麥類 기타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을 圖謀하는 措置)

1. 麥類의 政府買入

가. 政府는 麥類를 生産者 또는 生産者로 부터 委託을 받은 者의 賣渡申請에 應해 무제한 매입하지 않으면 아니되도록 할 것

나. 가의 規定에 의한 政府買入價格(다에 있어서는 「政府買入價格」이라 한다)은 農林水産大臣이 麥類의 生産費, 기타 生産條件, 麥類의 需給 및 供給動向 또는 物價, 其他經濟 事情을 參酌하여 麥類의 再生産을 確保할 것을 要旨로 정하도록 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國內에서의 麥作의 生産性 및 國內産麥類의 品質改善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토록 할 것

다. 農林水産大臣은 나의 規定에 의해 政府買入價格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意見을 聽取하여야 한다.(第66條 關係)

2. 政府는 麥類 등의 輸入을 目的으로 한 買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第67條 第1項 關係)
3. 麥類의 政府賣渡
 - 가. 政府는 保有하고 있는 麥類를 隨意契約에 의해 賣渡토록 할 것, 다만 農林水産大臣이 隨意契約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入札方法에 있어서 一般競争 契約 또는 指名競争契約중 農林水産大臣이 選擇하는 競争契約에 의해 賣渡토록 할 것
 - 나. 其他 麥類의 政府賣渡에 관한 所定規定을 整備토록 할 것(第68條 및 第69條 關係)
4. 麥類 등의 輸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政府의 委託을 받은 경우 기타 一定의 경우를 除外하고 國際規約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정해서 告示하는 金額에 當該 輸入에 관한 麥類 등의 數量을 공급하여 얻은 金額을 政府에 納付하도록 할 것(第70條 第1項 關係)
5. 政府는 米穀 및 麥類 以外の 主要食糧의 買入 및 賣渡를 할 수 있도록 할 것(第71條 第1項 및 第2項 關係)

第12條(雜 則)

1. 政府는 米穀供給이 크게 不足 또는 不足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基本計劃에 立脚한 米穀의 適切하고 또 圓滑한 供給이 相當期間 더없이 困難하게 되어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民經濟의 圓滑한 運營에 顯著하게 支障을 招來하거나 또는 招來할 憂慮가 있을 경우에는 그 事態에 對處하기 위해 2부터 4까지에서 規定하는 措置를 講究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閣議를 거쳐 그 趣旨를 告示토록 할 것(第80條 第1項 關係)
2. 農林水産大臣은 1에서 規定하는 事態에 對處하기 위해 自主流通法人, 登錄出

荷取扱業者, 登録都賣業者 또는 登録小賣業者に 對해 그가 保有하는 米穀의 讓渡, 移動 또는 保管에 關해 地域 또는 時間의 指定, 數量 또는 價格의 制限에 服從할 것을 命令할 수 있도록 할 것(第81條 第1項 關係)

3. 米穀生産者に 對한 指示등

가. 農林水産大臣은 2에서 規定하는 措置를 講究하였음에도 아직 米穀의 適切하고 또 圓滑한 供給의 確保가 困難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米穀生産者에 對해 賣渡하여야 할 期限 및 數量을 定하고 生産한 米穀으로서 當該生産者에 對한 計劃出荷基準數量의 範圍內的 것을 農林水産大臣이 指定하는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하도록 指示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農林水産大臣은 가의 規定에 의한 指示를 받은 生産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그 指示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當該生産者에 對하여 賣渡하여야 할 期限 및 數量을 定하고 그 生産한 米穀으로서 當該生産者에 對한 計劃出荷基準數量의 範圍內的 것을 政府에 賣渡토록 命令할 수 있도록 할 것(第82條 第1項 및 第2項 關係)

4. 2 및 3에서 規定하는 措置만으로는 1에서 規定한 事態를 克服하기에 현저하게 困難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法令으로 米穀의 割當 혹은 配給 또는 米穀의 使用, 讓渡의 制限 또는 禁止에 關한 필요한 事項을 定할 수 있도록 할 것(第83條 第1項 關係)

第13條(罰 則)

罰則에 있어서는 所要의 規定을 두도록 할 것(第84條부터 第92條까지 關係)

第14條(附 則)

1. 이 法律은 公布한 날부터 起算하여 1年을 超過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法令으로 定한 날부터 施行하도록 할 것, 다만 輸入關係의 規定등은 1995年 4月 1日(世

界貿易機關을 設立하는 마라케슈協定이 日本國에서 效力이 發效되는 날이 1995年 4月 1日 以後가 될 경우에는 當該協定이 日本國에서 效力이 發效하는 날이 후의 法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施行하도록 할 것(附則 第1條 關係)

2. 食糧管理法은 廢止하도록 할 것(附則 第3條 關係)

3. 食糧管理特別會計法에 있어서는 輸入에 관한 米穀등의 賣買에 의해 얻어 지는 利益을 備蓄으로 因한 損失에 充當하기 위한 所要의 改正을 行하도록 할 것(附則 第13條 關係)

4. 其他 關係法律에 對해 所要의 改正을 實施할 것

第15條(其 他)

기타 所要規定을 整備할 것

法律全文

目次

第1章 總則(第1條~第3條)	33
第2章 米穀需給 및 價格安定을 도모하기 위한 措置	35
第1節 基本計劃(第4條)	35
第2節 計劃的인 流通確保에 관한 措置	37
第1款 生産者(第5條)	37
第2款 出荷取扱業(第6條~第27條)	38
第3款 自主流通法人(第28條~第34條)	46
第4款 販賣業(第35條~第47條)	50
第5款 自由流通米價格形成센터(第48條~第58條)	56

(96년 1월호에)

 第3節 政府收買 및 賣渡등(第59條~第65條)

第3章 麥類 기타 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措置

(第66條~第71條)

第4章 雜則(第72條~第83條)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律은 主要食糧인 米穀 및 麥類가 主食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함과
동시 重要한 農産物으로서의 地位를 占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米穀生産者로 부
터 消費者에 이르기까지 計劃的 流通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와 더불어 政府가 行하
는 主要食糧의 買收, 輸入 및 賣渡措置를 總括적으로 講究함으로써 主要食糧의 需
給 및 價格의 安定을 圖謀하여 國民生活과 國民經濟를 安定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主要食糧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基本方針) ① 政府는 米穀需
給 및 價格安定을 期하기 위해 米穀 需給의 正確한 趨勢를 策定하여 이에 따라 計
劃的이고 合理性을 가지고 米穀의 需給均衡을 維持하기 위한 生産調整을 圓滑히
推進시켜 米穀供給이 不足한 事態에 對備한 備蓄量의 能動的인 經營과 消費者가
必要로하는 米穀을 適正하고 圓滑한 流通을 確保함과 同時에 米穀을 適切히 收買
· 輸入 및 放出 賣渡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麥類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適切한 收買· 輸入 및 放
出賣渡를 行하여야 한다.

第 3 條(定 義)

1. 이 法律에 있어서 主要食糧이라 함은 米穀· 麥類(小麥· 大麥 및 稞麥을 말한
다. 以下같다)그 밖의 法令에서 定하는 食糧(이것들을 加工, 또는 製造한 것
으로 法令으로 정한 것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法律에 있어서 「米穀의 生産調整」이라 함은 農林水産大臣이 定한 米穀의
生産目標를 基礎로 하여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農業者마다 정해진 面積의
畝(災害로 因해 米作이 顯著히 곤란한 土地 其他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한 土地

를 포함)에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것에 對해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其 以外의 農作物의 作付 其他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方法에 의한 米穀(飼料用, 其他 農林水産大臣이 定하는 用途에 다른 것은 除外)의 生産活動을 調整하는 것을 말하고 「生産調整實施者」란 該當 生産活動의 調整을 받아 實施한 者를 말한다.

3. 이 法律에 있어서 「米穀의 備蓄」이라 함은 米穀 生産量의 減少로 인한 供給의 不足에 對比하여 필요한 數量의 米穀을 備蓄保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法律에서 「計劃流通數量」이란 消費者에 對한 計劃的供給을 期하기 위해 農林水産大臣이 定하는 米穀數量을 말한다.
5. 이 法律에서 「計劃出荷數量」이라 함은 生産者로 부터 計劃的인 出荷가 되도록 하기 위해 農林水産大臣이 計劃流通數量을 勘案하여 定하는 米穀의 數量을 말한다.
6. 이 法律「自主流通米」라 함은 計劃出荷數量에 관한 米穀중 生産者로 부터 登錄 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 또는 賣渡委託되는 것으로서 第30條 第1項의 認可를 받는 自由流通計劃에 따라 流通되는 것을 말한다.
7. 이 法律에서 「政府米」라 함은 計劃出荷數量에 관한 米穀중 生産調整實施者로 부터 政府가 買入·賣渡하는 것과 輸入에 의한 米穀으로서 政府가 取得하여 賣渡하는 것을 말한다.
8. 이 法律에서 「計劃流通米」라 함은 自主流通米 및 政府米을 말한다.
9. 이 法律에서 「第1種出荷取扱業」이라 함은 米穀生産者로 부터 第5條 第1項의 計劃出荷米 賣渡 또는 賣渡委託을 받아 그 出荷를 取扱하는 業務를 말하고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란 第1種 出荷取扱業을 하기 위한 第6條 第1項 또는 第10條 第2項의 登錄을 畢한 者를 말한다.

10. 이 法律에서 「第2種出荷取扱業」이란 함은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로 부터 第5條 第1項의 計劃出荷米의 賣渡 또는 賣渡委託을 받아 그 出荷를 取扱하는 業務를 말하고 「第2種登録出荷取扱業者」란 第2種 出荷取扱業을 하기 위해 第6條 第1項 또는 第27條 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第10條 第2項의 登録을 畢한 者를 말한다.
11. 이 法律에서 「出荷取扱業」이라 함은 第1種出荷取扱業 및 第2種出荷取扱業을 말하고 「登録出荷取扱業者」란 第1種登録出荷取扱業者 및 第2種登録出荷取扱業者를 말한다.
12. 이 法律에서 「都賣業」이라 함은 計劃流通米의 都賣業務를 말하고 「登録都賣者」란 都賣業을 하기 위해 第35條 第1項 또는 第41條 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10條 第2項의 登録을 畢한 者를 말한다.
13. 이 法律에서 「小賣業」이라 함은 計劃流通米의 小賣를 하는 業務를 말하고 「登録小賣業者」란 小賣業을 하기 위해 第35條 第1項 또는 第41條 第1項에서 準用하는 第10條 第2項의 登録을 畢한 者를 말한다.
14. 이 法律에 있어서 「販賣業」이라함은 都賣業 및 小賣業을 말한다.

第2章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圖謀하기 위한 措置

第4條(基本計劃) ① 農林水産大臣은 米穀의 需給 및 價格의 安定을 期하기 위하여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 있어서는 다음에 掲記하는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1. 米穀의 需給 및 價格安定에 관한 基本方針
2. 米穀의 需給推移에 관한 事項

3. 米穀의 生産目標 기타 米穀의 生産調整에 관한 事項
4. 米穀의 備蓄目標量 그 밖에 備蓄米穀의 運營에 관한 事項
5. 計劃出荷數量 및 計劃出荷數量中 米穀의 備蓄運營을 위해 政府에서 收買하는 米穀의 種類別 數量에 관한 事項
6. 計劃流通數量 또한 그것의 國內產 또는 外國產別, 自主流通米 또는 政府米別 및 그 種類別數量에 관한 事項
7. 前項에 揭記한 數量에 있어서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地域別 또는 期間別로 접하는 數量에 관한 事項
8. 米穀의 輸入數量 및 그 種類別數量에 관한 事項
9. 기타 米穀의 需給과 價格 安定에 관한 事項
- ③ 農林水産大臣은 基本計劃을 樹立할 때에는 當該 基本計劃米穀生産者의 營農活動에 合當하도록 法令을 定하게 되므로 前項 第2號, 第3號 및 第5號에 揭記된 事項에 있어 計劃的인 生産 및 出荷指針이 되는 것을 定하고 이를 公表하도록 한다.
- ④ 農林水産大臣은 基本計劃(第2項 第7號에 揭記된 事項은 除外, 第6項에 있어서도 같다)을 定하고자 할 때에는 米穀의 需給事情등에 關係 學識·經驗이 있는 者 및 關係者의 意見を 聽取하도록 한다.
- ⑤ 農林水産大臣은 第2項 第7號에 揭記된 地域別數量을 定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그 關係部令에 있어서 關係都·府·縣知事의 意見を 聽取하여야 하며 當該數量을 決定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當該關係部令에 對해 關係都 道·府·縣知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⑥ 農林水産大臣은 基本計劃을 樹立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公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⑦ 農林水産大臣은 米穀의 需給事情 기타 經濟事情에 變動이 생겼을 경우에 있어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되었을 때에는 基本計劃을 修正·變更할 수 있다.

⑧ 第4項 내지 條6項까지의 規定은 事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變更에 따라 準用한다.

第 2 節 計劃的流通의 確保에 관한 措置

第 1 款 生産者

第 5 條(米穀의 賣渡先등) ① 米穀生産者는 生産한 米穀中 基本計劃에 의해 定해진 出荷計劃數量을 基礎로 한 法令이 定한바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이 各 米穀生産者마다 定한 數量(以下「計劃出荷基準數量」이라 한다)에 관한 米穀(以下「計劃出荷米」이라 한다)에 있어서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自主流通米로 하여 第1種登錄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 또는 賣渡委託하며 또는 政府米로 하여 政府에 賣渡 또는 第1種登錄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委託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當該 賣渡(委託하여 賣渡하는 것도 포함)에 관한 米穀은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計劃出荷米이란 表示가 부착된 米穀이라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米의 賣渡(委託賣渡를 포함)는 米穀生産者가 生産調整 實施者인 경우에 있어서는 基本計劃에 定해진 政府가 收買한 米穀의 數量을 基礎로 法令이 定하는 바에 의해 農林水産大臣이 當該生産調整實施者에게 各已 定해진 數量에 관한 米穀에 對해 行할 수 있다.

③ 米穀生産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한 바에 따라 農林水産大臣에게 計劃出荷基準 數量의 變更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水産大臣은 米穀의 計劃的인 流通量確保에 支障을 줄 憂慮가 있다고 法令으로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그 變更申請을 承認하여야 한다.

④ 米穀生産者(法令에 의해 定한 者에 限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出荷米에 있어서는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에게 賣渡 또는 賣渡委託코저 할 경우에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르며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와 米穀出荷에 관한 契約(以下「出荷契約」이라 한다)을 맺은후 行하여야 한다. 米穀生産者는 生産한 米穀으로 計劃出荷米以外の 것을 賣渡할 경우에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르되 事前에 當該 賣渡에 관한 數量을 農林水産大臣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第2款 出荷取扱業

第6條(出荷取扱業의 登錄) ①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大臣의 登錄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登錄은 第1種 出荷取扱業 및 第2種 出荷取扱業으로 區分하여 都·道·府·縣의 區域마다 行한다.

第7條(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錄申請) ①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의해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法人일때에는 그 法人體의 代表者의 姓名
2. 營業所의 住所地
3. 法人일 때에는 第1種 出荷取扱業을 擔當하는 任員의 姓名
4. 第1種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都·道·府·縣의 區域
5. 第1種 出荷取扱業에 必要한 施設狀況

② 前項의 申請書에는 第1種 出荷取扱業에 對해 農林水産省令이 定한 事項을 記載한 事業計劃書 및 第9條 第1項 第5號 乃至 第7號까지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을 誓約한 書面과그 以外の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 8 條(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錄實施)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이 있을 때 다음 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拒否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 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1. 前條 第1項 乃至 第4號까지 揭記된 事項

2. 登錄年月日 및 登錄番號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에 의한 登錄을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9 條(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錄拒否) ① 農林水産大臣은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錄申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 또는 第7條 第1項의 申請者 혹은 同條 第2項의 事業計劃書 또는 添附書類중 重要事項에 對한 虛偽記載 및 重要한 事實의 記載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1. 第1種 出荷取扱業을 正確히 遂行할 수 있는 資力과 信用을 갖추지 못한者

2. 第1種 出荷取扱業에 通常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施設로 農林水産省令에 의해 定해진 것을 根幹으로 한 것에 適應 利用하지 못한 者

3. 申請者와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그 申請에 관한 都·道·府·縣의 區域內의 米穀生産者의 數가 法令이 定한 數以上이고 또한 當該 申請者와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當該 區域內의 米穀生産者가 農林水産省令이 定한 바에 따라 當該申請者에 賣渡 또는 賣渡委託(以下「賣渡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當該年産의 計劃出荷米의 數量이 法令이 定한 數量以上이라고 設定되지 못한 者

4. 申請에 관한 都·道·府·縣區域內의 第2種 出荷取扱業者 또는 第2種 出荷取扱業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및 第28條 第3項의 自主流通法人 혹은 同項의 自主流通法人의 指定을 希望하는 者와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30

條 第1項의 自主流通計劃에 관한 賣渡등에 對한 契約(以下「自主流通契約」이라 한다)을 締結하지 못한 者

5.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罰金以上の 刑을 받고 그 刑期를 終了하거나 또는 그 刑執行을 받지 아니한 날로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6. 第19條(第27條 第1項을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의 規定에 의해 出荷取扱業의 登録이 取消되어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7. 法人으로서 第1種 出荷取扱業을 擔當하는 任員中 前2號중 1에 該當되는 者가 있을 때
8.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로서 第1種 出荷取扱業을 當該 登録의 有效期間 滿了前에 廢止하고자 하는 者로 부터 當該 第1種 出荷取扱業을 讓與받아 繼續 當該 第1種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當該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로 부터 當該 第1種 出荷取扱業에 관한 모든 債權債務를 承繼하지 않은 者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拒否할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提示하여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第1種 出荷取扱業登録의 有效期間등) ①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은 每年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하는 期日에 行하도록 하고 그 有效期間은 當該期日부터 起算하여 3年으로 한다. 다만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가 行하는 第1種 出荷取扱業을 讓與받아 當該 第1種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관한 登録有效期間은 3年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데 따른다.

② 前項의 有效期間이 滿了된 後에도 繼續 第1種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更新登録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第7條부터 前條까지 또 第1項 前段의 規定은 前項의 更新登録에 있어 準用한다.

第11條(第1種 出荷取扱業의 承繼) ① 第1種 登録出荷販賣業者에 있어서 相續 또는 合併이 있을 경우에는 相續人(相續人이 2人以上이 있을 경우에는 그 全員協議에 의해 第1種 出荷取扱業을 承繼하는 相續人 選任한 者, 以下 이 項에서는 같다)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혹은 合併에 따라 設立된 法人은 그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의 資格을 承繼한다. 다만 當該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合併에 따라 設立된 法人이 第9條 第1項 第5號 乃至 第7號까지의 1에 該當할 때에는 이에 限하지 않는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해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의 資格을 承繼한 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없이 그 要旨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2條(第1種 出荷取扱業 登録事項의 變更提出) 第1種 登録出荷業者는 第7條 第1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揭記된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項을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3條(第1種 出荷取扱業의 廢業提出)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는 第1種 出荷取扱業을 廢業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4條(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가 賣渡등을 받는 者の 特定등) ①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는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그 登録에 關係되는 都·道·府·縣區域內의 米穀生産者以外的 사람으로 부터 自主流通米를 買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는 出荷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그 登録에 關係되는 都·道·府·縣區域內의 生産調整實施以外的 사람으로 부터 政府米 賣渡委託을 받지 못한다.

第15條(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가 賣渡할 수 있는 者の 特定등) ①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는 第30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計劃에 따라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그 登録에 關係되는 都·道·府·縣區域內의 第2種 登録出荷取扱業者 또는

第28條 第3項의 自主流通法人에게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하고 또한 登錄都賣業者, 其他 法令이 正한 者에게 自主流通米를 賣渡하여야 한다.

②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는 賣渡委託된 政府米를 政府에 賣渡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 當該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는 自主流通契約을 맺고 있는 그 登錄에 關係되는 都·道·府·縣區域內的 第2種 등록출하 取扱業者 또는 第28條 第3項의 自主流通法人에 委託하여 當該政府米를 賣渡할 수 있다.

第16條(遵守事項) ①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第5條 第1項 後段의 表示된 米穀이 아니면 計劃出荷米로서 賣渡등 去來할 수 없다.

② 前項에서 規定한 것 以外の 計劃出荷米의 出荷取扱에 있어서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가 遵守하여야 할 事項은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한다.

第17條(報告등) ①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備置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事項을 記載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②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事業年度終了後 事業報告書를 作成하여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8條(改善命令) 農林水産大臣은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의 業務 運營에 관한 改善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當該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에 對하여 改善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19條(第1種 出荷取扱業登錄의 取消등) 農林水産大臣은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 또는 期間을 定해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の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第9條 第1項 第5號 또는 第7號에 該當하였을 때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提出을 하지 않고 또는 虛僞提出을 한 때
3. 前條 또는 本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
4. 不正한 方法으로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取하였을 때

第20條(第1種 出荷取扱業 登録의 抹消) 農林水産大臣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提出이 있을때 또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取消하였을 때에는 그 登録을 抹消하여야 한다.

第21條(聽聞의 特例) ① 農林水産大臣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手續法(1993年 法律 第88號)第 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陳述을 爲한 節次의 區分에 不拘하고 聽聞을 하여야 한다.

②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관한 聽聞期日과 審理는 公開裡에 行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聽聞主宰者는 行政手續法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當該處分에 關係되는 利害關係人이 當該聽聞에 관한 手續에 參席을 要求하였을 때에는 이를 許諾하여야 한다.

第22條(第2種 出荷取扱業登録의 申請) 第2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에 揭記된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所在地 住所, 法人일 때에는 그 代表者의 姓名
2. 營業所 所在地
3. 法人일 때에는 第2種 出荷取扱業을 擔當하는 任員의 姓名
4. 第2種 出荷取扱業을 하고자 하는 都·道·府·縣의 區域

② 前項의 申請書에는 第2種 出荷取扱業에 있어서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事項을 記載한 事業計劃書 및 第24條 第1項 第3號부터 第5號까지 該當하지 않다는 것을 誓約한 書面, 其他 農林水産省令이 定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23條(第2種 出荷取扱業者 登録의 實施) ① 農林水産大臣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登録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다음 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拒否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에 掲記한 事項을 第2種 登録出荷取扱業者 登録簿에 登録하여야 한다.

1. 前條 第1項 各號에 掲記한 事項

2. 登録年月日 및 登録番號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을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條(第2種 出荷取扱業登録의 拒否) ① 農林水産大臣은 第2種 出荷取扱業登録의 申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었을 때 또는 第22條 第1項의 申請書 혹은 同條 第2項의 事業計劃書 또는 添附書類中에 重要な 事項을 虛偽記載, 重要な 事實을 누락하였을 때에는 그 登録을 拒否하여야 한다.

1. 第2種 出荷取扱業을 正確하게 遂行할 資力·信用을 갖지 못한 者

2. 申請에 關係되는 都·道·府·縣의 區域內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 또는 第1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받고자 하는자 및 第28條 第3項의 自主流通法人 또는 同項의 自主流通法人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와 自主流通契約을 맺지 못하고 있는 者

3.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罰金刑以上の 刑에 處해지고 그 刑期를 終了 또는 執行이 滿了된 날로 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4. 第19條(第27條 第1項을 準用하는 경우에도 포함)의 規定에 의해 出荷取扱業 登録을 取消하고 그 取消日부터 2年의 經過하지 않은 者

5. 法人으로서 第2種 出荷取扱業을 擔當하는 任員중 第2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을 때

6. 第2種 登録出荷取扱業者가 第2種 出荷取扱業을 當該 登録有效期間이 滿了되기

第10條 第1項	第1種 登録出荷取扱業者	第2種 登録出荷取扱業者
第1條 第3項	第7條부터 前條까지	第22條부터 第24條까지
第11條 第1項, 第13條 第19條 第4號 및 第20條	第1種 出荷取扱業者	第2種 出荷取扱業者
第11條 第1項	第9條 第1項 第5號부터 第7號까지	第24條第1項 第3號부터 第5號까지
第12條	第7條第1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22條第1項第1號 부터 第3號까지
第19條 第1號	第9條第1項第5號 또는 第7號	第24條第1項第3號 또는 第5號

③ 第21條의 規定은 前項에서 準用하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處分에 있어서 準用한다.

第3款 自主流通法人

第28條(指定) ① 農林水産大臣은 다음 條項에서 規定하는 業務 및 第30條 第1項의 自主流通計劃作成에 關하여 다음 各號에 揭記한 基準에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法人을 그 申請에 의해 當該業務 및 當該自主流通計劃을 作成하는 者로 指定할 수 있다.

1. 다음條項이 規定하는 業務 및 第30條 第1項의 自主流通計劃의 作成을 適正하고 確實하게 實施하는데 충분한 經理的基礎 및 技術的能力이 있어야 한다.
2. 法令으로 定한 區域에 있어서 法令이 定한 數量以上の 自主流通米를 買入할 수 있다고 認定되어야 한다.
3. 登録出荷取扱業者 또는 第1種 出荷取扱業 혹은 第2種 出荷取扱業의 登録을 받

고자 하는 者와 自主流通契約을 締結 하고 있어야 한다.

4. 自主流通契約의 締結 및 다음條 第1項 第1號에 揭記된 業務에 關係 不當한 差別取扱을 하지 않는다고 認定되어야 한다.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申請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그 指定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農林協同組合聯合會, 協同組合聯合會 기타 營利을 目的으로 하지 않은 法人이 아닌者라야 한다.

2.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罰金以上の 刑에 處해지고 그 刑을 終了 또는 그 刑의 執行滿了가 된 날로 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3.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이 取消되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4. 그 任員중 第2號에 該當되는 者가 있을 때

③ 農林水産大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하였을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은 者(以下「自主流通法人」이라 한다)의 名稱·住所 및 事務所所在地를 官報로 公告하여야 한다.

④ 自主流通法人은 그 名稱·住所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그 事由를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⑤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提出이 있었을 때에는 그 要旨를 官報로 公示하여야 한다.

第29條(業務) ② 自主流通法人은 다음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計劃에 따라 다음에 揭記된 業務를 행한다.

1. 自主流通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登録出荷取扱業者로부터 自主流通米의 賣渡등을 받아 當該自主流通米를 登録都賣業者 기타 法令이 定하는 者에게 賣渡한다.

2. 前號의 規定에 의해 賣渡등을 받은 自主流通米의 一部에 있어서 備蓄 및 調整 保管(米穀生産量の 增大에 따른 供給過多에 對備하여 必要數量の 米穀을 備蓄 保有하는 것을 말한다)을 行한다.

3. 前2號에 揭記된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한다.

② 自主流通法人은 前項各號에 揭記된 業務를 遂行하는 외에 自主流通契約을 締結 하고 있는 登錄出荷取扱業者로 부터 賣渡委託받은 政府米를 政府에 賣渡 할 수 있 다.

第30條(自主流通計劃의 認可) ① 自主流通法人은 自主流通米의 計劃的인 流通을 確 保하기 위해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自主流通法人, 自主流通契約 을 締結하고 있는 第2種 登錄出荷取扱業者 기타 法令으로 定하는 者が 行하는 登 錄都賣業者 및 法令으로 定한 者에 自主流通米의 賣渡에 關한 計劃(以下「自主流 通計劃」라 한다. 또한 이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을 작성하여 農林水産大 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自主流通計劃에 있어서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揭記되는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1. 用途別 및 種類別 自主流通米의 買入 또는 賣渡委託에 관계되는 數量에 關한 事項

2. 用途別, 種類別 및 都·道·府·縣別의 自主流通米의 賣渡에 關係되는 數量에 關한 事項

3. 第49條 第1號의 價格形成施設에 있어서 賣渡하는 自主流通米의 數量에 關한 事項

4. 自主流通米의 備蓄數量에 關한 事項

5. 其他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事項

4. 第30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自主流通計劃에 따르지 아니하고 第29條 第1項各號에 揭記된 業務를 行하였을 때.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取扱 또는 第29條에서 規定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の 停止를 命하였을 때에는 그 要旨를 官報로 公示하여야 한다.

第4款 販賣業

第35條(販賣業의 登錄) ① 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都·道·府·縣知事의 登錄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登錄은 都賣 및 小賣業으로 區分하여 行한다.

第36條(都賣業의 登錄申請) ① 都賣業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의해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都·道·府·縣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法人일때에는 그 代表者의 姓名
2. 營業所의 所在地
3. 法人일 때에는 都賣業을 擔當하는 任員의 姓名
4. 申請에 關係되는 都·道·府·縣의 區域에 있어서 計劃流通米의 年間販賣豫想數量
5. 都賣業에 必要한 施設狀況

② 前項의 申請書에는 都賣業에 있어서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하는 事項을 記載한 事業計劃書 및 第38條 第1項 第4號부터 第6號까지 該當하지 않다고 하는 誓約書와 기타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37條(都賣業登錄의 實施) ① 都·道·府·縣知事は 前條의 規定에 의해 登錄申請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否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

에 揭記한 事項을 登錄都賣業者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1. 前條第1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揭記된 事項
2. 登錄年月日 및 登錄番號

②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旨를 申請者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38條(都賣業登錄의 拒否) 都·道·府·縣知事は 都賣業登錄의 申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였을 때 또는 第36條 第1項의 申請書 혹은 同條第2項의 事業計劃書 또는 添附書類중에 重要な 書類에 있어서 虛偽記載되거나 혹은 重要な 事實의 記載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하여야 한다.

1. 都賣業은 正確하게 遂行할 수 있는 資力·信用을 갖지 못한 者
2. 都賣業에 通常적으로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施設로서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權原에 의거할 때 利用할 수 없는 者
3. 申請에 關係되는 都·道·府·縣의 區域에 있어서 計劃流通米의 年間 販賣豫想數量이 法令이 定하는 數量 以上이라고 認定되지 않은 者
4.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罰金以上の 刑에 處해져 그 刑期를 終了 또는 執行猶豫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5. 第41條 第1項 또는 第47條 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해 販賣業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6. 法人으로서 都賣業을 擔當하는 任員중에 第2號의 1에 該當되는 者가 있을 때
7. 登錄都賣業者가 都賣業을 當該登錄 有效期間이 滿了前에 廢止코자 하는 者로부터 當該都賣業을 讓受, 繼續 當該都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일 경우에는 當該登錄業者로부터 當該都賣業에 관한 債權·債務 全部를 承繼받은 者가 아닐 때

②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業登錄을 拒否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提示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9條(登錄都賣業者의 買受先特定) ① 登錄都賣業者는 自主流通法人·登錄出荷取扱業者 기타 法令이 定하는 者 以外의 者로부터 自主流通米를 買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登錄都賣業者는 政府, 其他 法令이 定한 者 以外의 者로부터 政府米를 買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0條(登錄都賣業의 販賣先特定) 登錄都賣業者는 登錄小賣業者, 其他 法令이 定한 者 以外의 者에게 計劃流通米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準用) 第10條의 規定은 都賣業에 대하여 第11條부터 第13條 및 第16條 乃至 第20條까지의 規定은 登錄都賣業者에 대해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表의 左欄에 揭記하는 規定중 同表의 中欄에 揭記하는 字句는 各各 同表左側欄에 揭記되는 字句로 代表하여 解讀하도록 한다.

第10條 第1項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	登錄都賣業者
第10條 第3項	第7條부터 前條까지	第36條부터 第38條까지
第11條 第1項 第13條, 第19條 第4號 및 第20條	第1種 出荷取扱業	都賣業
第11條 第1項	第9條 第1項 第5號부터 第7號까지	第38條 第1項第4號부터 第6號까지
第11條 第2項 第12條, 第13條 第17條 第2項 및 第18條부터 第20條까지	農林水産大臣	都·道·府·縣知事
第12條	第7條 第1項 第1號부터	第36條 第1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3號까지
第16條 第1項	計劃出荷米로서 賣渡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計劃流通米(輸入에 관계되는 米穀은 除外)로 하여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第2項	計劃出荷米 出荷의 取扱	計劃流通米의 販賣
第19條 第1號	第9條 第1項 第5號 또는 第7號	第38條第1項 第4號 또는 第6號

② 第21條의 規定은 前項에 있어서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處分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第21條 第1項중 「農林水産大臣」으로 된것을 「都·道·府·縣知事」로 代替하여 解讀하여야 한다.

第42條(小賣業登錄의 申請) ① 小賣業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都·道·府·縣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法人일 때에는 그 法人代表者의 姓名
2. 販賣所의 所在地
3. 法人일 때에는 小賣業을 行하는 任員은 姓名

② 前項의 申請書에는 小賣業에 對해 農林水産省令이 定한 資源을 記載한 事業計劃書 및 第44條 第1項 第3號부터 第5號까지에 該當하지 않다는 誓約을 書面, 其他 農林水産省令에서 定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43條(小賣業 登錄의 實施) ① 都·道·府·縣知事は 前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拒否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다음 各號에 揭記되는 事項을 登錄小賣業者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1. 前條 第1項 第1號 乃至 第3號까지 揭記된 事項

2. 登錄年月日 및 登錄番號

②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4條(小賣業登錄의 拒否) ① 都·道·府·縣知事は 小賣業登錄의 申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될 때 또는 第42條 第1項의 申請書 혹은 同條 第2項의 事業計劃書 또는 添附書類중에 重要한 事項에 對한 虛僞記載, 혹은 重要事實의 記載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그 登錄을 拒否할 수 있다.

1. 小賣業을 正確히 遂行함에 充分한 資力·信用이 없는 者
2. 小賣業에 通常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施設이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權原에 의거한 때 利用할 수 없는 者
3.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 罰金以上の 刑에 處해져 그 刑期를 終了 또는 刑의 執行을 猶豫받은 날로 부터 2年이 經過하지 않은 者
4. 第41條 第1項 또는 第47條 第1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販賣業登錄이 取消된 날로 부터 2年이 經過하지 못한 者
5. 法人으로서 小賣業을 行하는 任員중 第2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있을때
6. 登錄小賣業者가 小賣業을 當該 登錄의 有效期間이 滿了되기 前에 廢止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當該小賣業을 讓渡 繼續 當該小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 當該登錄小賣業者로부터 當該小賣業에 관계되는 債權債務의 全部를 承繼받지 못한 者

② 都·道·府·縣知事は 前項의 規定에 의해 小賣業登錄을 拒否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提示하여 그 要旨를 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5條(小賣業의 變更登錄) ① 登錄小賣業者는 第42條 第1項 第2號에 揭記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變更登錄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變更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省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變更에 관한 事項을 揭記한 申請書를 都·道·府·縣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42條 第2項, 第43條 및 前條의 規定은 第1項의 變更登錄에 對해 準用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 第42條 第2項중 「事業計劃書」등이라 함은 「事業計劃書」와 第43條 第1項중 「다음에 揭記하는 事項」이라고 된 것은 「變更에 관한 事項」과 前條第1項중 「第42條 第1項의 申請書 혹은 同條 第2項의 事業計劃書 또는 添附書類」이라고 하는 것은 「變更登錄에 관한 申請書 혹은 그 添附書類」이라고 하는 것은 「變更登錄에 관한 申請書 혹은 그 添附書類」라고 바꾸어 解讀하도록 한다.

第46條(登錄小賣業者의 買受先 特定) 登錄小賣業者는 登錄都賣業者 其他 法令에서 定하는 者 以外の 者로부터 計劃流通米를 買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7條(準用) ① 第10條의 規定은 小賣業에 있어서, 第11條부터 第13條까지 第16條, 第17條 第1項 및 第18條부터 第20條까지의 規定은 登錄小賣業者에 對해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表중 左欄에 揭記한 規定중 中欄에 揭記한 字句는 各各 同 表중 右欄에 揭記한 字句로 代替하여 解讀한다.

第10條 第1項	第1種 登錄出荷取扱業者	登錄小賣業者
第10條 第3項	第7條부터 前條까지	第42條부터 第44條까지
第11條, 第1項 第13條, 第19條 第4號 및 第20條	第1種 出荷取扱業	小賣業
第11條 第1項	第9條 第1項 第5號부터 第7號까지	第44條 第1項 第3號부터 第 5號까지
第11條 第2項 第12條, 第13條 및 第18條부터 第20條까지	農林水産大臣	都·道·府·縣知事

第12條	第7條 第1項 第1號부터 第3號까지	第42條 第1項 第1號또는 第3號까지
第16條 第1項	計劃出荷米로 하여 賣渡 등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計劃流通米(輸入에 관계되 는 米穀은 除外)로 하여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 第2項	計劃出荷米 出荷의 取扱	計劃流通米의 販賣
第19條 第1號	第9條 第1項 第5號 또는 第7號	第44條 第1項 第3號 또는 第5號
第19條 第2號	또는 虛偽提出하였을 때	혹은 虛偽提出하였을 때 또는 第45條의 第1項의 變更登錄을 畢하지 않았을 때

② 第21條의 規定은 前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處分에 있어서 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第21條 第1項中 「農林水産大臣」이라 하는 것을 「都·道·府·縣知事」라 代替 解讀하도록 한다.

第 5 款 自主流通米 價格形成센터

第48條(指定) ① 農林水産大臣은 自主流通米의 去來地標가 되는 適正價格의 形成을 圖謀하고 또 圓滑한 商去來에 기여토록 한다는 目的下에 設立된 民法(明治 29年 法律第89號) 第34條에 依據한 法人으로서 다음 條에서 規定한 業務를 適正하고 또 確實하게 行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것을 그 申請에 의해 全國을 通해 1個에 限해 自主流通米 價格形成센터(以下「센터」라 한다)로 指定 할 수 있다.

③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해 指定을 하였을 때에는 當該센터의 名稱, 所在 및 事務所의 所在地를 官報로 公示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그 名稱·住所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그 要旨을 農林水産大臣에게 提出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④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따라 提出이 있었을 때에는 그 要旨을 官報로 公示하여야 한다.

第49條(業務) 센터는 다음에 揭記한 業務를 行한다.

1. 自主流通米의 去來地標가 되는 價格形成에 必要한 그 賣買去來를 行하기 爲한 施設(以下「價格形成施設이라 한다」)을 開設한다.

2. 前號에 揭記한 業務에 附帶한 業務를 行한다.

第50條(業務規定의 認可) ① 센터는 前條 第1號에 揭記한 業務를 行할 때에 當該業務開始前에 當該業務의 實施에 關한 規程(以下「業務規定」라 한다)을 作成하여 農林水産大臣의 認可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認可를 한 業務規程이 前條第1項에 揭記한 業務를 適正하고 또 確實한 實施에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事務規程을 變更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③ 業務規程에 記載할 事項 및 第1項의 認可 基準에 있어서는 農林水産省令으로 定한다.

第51條(販賣去來를 할 수 있는 者) ① 價格形成 施設에서 自主流通米의 賣渡를 行할 수 있는 者는 自主流通法人·第2種 登錄出荷取扱業者 및 其他 法令으로 定하는 者로 한다.

② 價格形成 施設에서 自主流通米를 買受할 수 있는 者는 登錄都賣業者·其他法令에서 定한 者로 한다.

第52條(賣買去來) ① 價格形成 施設에서 自主流通米의 賣買去來(以下「賣買去來」라 한다)는 入札方式에 依하여야 한다.

② 價格形成 施設에서는 商品去來所法(1950年 法律 第239號)第2條 第6項 各號에

수 있다.

第58條(指定의 取消) 農林水産大臣은 센터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었을 때에는 第4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以下 이 條에서는 「指定」이라 한다)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49條 各號에 揭記된 業務를 適正하고 더욱 確實하게 實施할 수 없다고 認定되었을 때
 2. 指定에 關해 不正한 行爲가 있었을 때
 3. 이 款의 規定 또는 當該規定에 따르는 命令 혹은 處分에 違反하였을 때
 4. 第50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業務規定에 따르지 않고 第49條 第1號에 揭記된 業務를 하였을 때
- ② 農林水産大臣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取消하였을 때에는 그 要旨를 官報로 公示하여야 한다.

(1996年 1月 461號 繼續)